

재입학 운영 내규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18조 3항에 의거 재입학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자격)

- ① 본 대학교에 입학(편입)하여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성적(F 이상) 부여 이력이 있는 자
- ②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에 지원할 수 없다.(학칙 제18조)

제3조(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학칙 제18조)
- ② 재입학 허가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모집 단위별 1~4학년 제적자 총 수를 당해 연도 재입학 여석 범위로 한다.
- ③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유사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 ④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 ⑤ 위 4항의 유사 모집단위 인정 여부는 해당 모집단위가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학사운영팀에 통보한다.
- ⑥ 재입학은 제적 당시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학년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

- ①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제적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단, 의과대학은 따로 정한다)이어야 한다.(학칙 제18조)
- ② 제적 전 부여된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강제유급 및 유급휴학을 실시한다.

제5조 (복수전공 포기자)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된 자가 복수전공 학과(부)로의 재입학하는 것은 불허한다.

제6조 (학업연장자)

학업연장자는 재입학 후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학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재입학을 취소한다.

제7조 (재입학 절차)



- ①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접수한 뒤 전형을 진행하고 등록기간 이전에 재입학 여부를 본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 내에 미납 시에는 재입학 1회가 인정되고 합격취소 처리된다. 다만, 등록금을 분할 납부 중인 학생이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된다.
- ③ 재입학자의 학점은 재입학 허가된 당해학년·학기 직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 ④ 재입학생의 재학생 신분은 재입학 학기 개강일 부터 인정한다.
- ⑤ 재입학 신청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은 학과 회의를 통해 교육혁신처에 재입학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혁신처 심의를 통하여 재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제8조 (전형 방법)

재입학 신청 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전형 방법은 제적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통산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한다.

제9조 (성적 사정)

재입학자의 소속 학과는 필요시 재입학자의 학점, 과목구분, 배당학점 등을 재사정할 수 있다.

- ① 학점 및 과목구분을 현재의 교육과정 기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운영상 선수강과목이 필요할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교양학점은 입학당시 적용받았던 최소교양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 ④ 전공학점은 학적변동 후의 전공학점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 ⑤ 졸업학점은 학적변동 후의 졸업학점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내규는 200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⑮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